

기획논문

지속가능개발과 한국무형문화유산정책

김용구

문화재청

Corresponding Author : altay@korea.kr

국문초록

UN은 2015년 9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앞으로 추진할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로 「지속가능개발 2030 의제」를 채택하였다. 이에 UNESCO는 2016년 5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지속가능개발과 무형유산보호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였다. 지속가능개발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주요한 이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동안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무형문화유산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UNESCO는 이번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들이 지속가능개발과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무형문화재제도는 1960년대부터 산업화로 표현되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소멸되어 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였다. 그러나 동시에 무형문화재제도는 경제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근대적 국민형성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개발을 위한 문화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지속가능개발의 제기는 그 이전의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개발개념이 심화되고 확장된 결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그 동안의 개발성과를 계승하여 보다 성숙한 개발의 단계로 나간다는 관점에서 지속가능개발과 결합하는 무형문화유산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의 의미와 그것이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정책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하고, 한국무형문화유산정책이 사회개발과 인간개발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개발 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I. 서론

2015년 9월 UN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UN이 추진할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로 「지속가능개발 2030 의제」를 채택하였다. 이에 UNESCO는 지속가능개발의 추진에 있어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과 역할을 밝히기 위하여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운영지침(Operational Directiv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개정한다. 지속가능개발과 무형문화유산을 통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들이 지속가능개발과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어떻게 결합하고 무형문화유산보호 과정에서 지속가능개발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인간 삶의 개선을 위한 무형문화유산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지속가능개발은 그 이전 개발 개념의 진화 결과이다. 지속가능개발은 경제개발에 대한 제한의 의미로 시작하였으나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을 포괄하는 인간 삶에 대한 개선의 의미로 확장·심화되어 왔다. 이런 측면에서 근대적 개발과정과 함께 전개되어온 한국의 무형문화재제도¹는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한국의 무형문화재제도는 1960년대부터 산업화로 표현되는 개발과정에서 소멸되어 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경제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한국무형문화유산정책은 근대적 개발을 위한 문화적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개발과 깊은 고리를 갖고 전개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개발의 한국무형문화유산정책에의 수용방향을 정리하는 것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무형문화유산의 일반적 역할을 규명하는 것임과 동시에 개발의 관점에서 한국무형문화유산정책의 영역을 새롭게 개척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발과 지속가능개발의 개념을 정리하고 최근의 UN과 UNESCO의 지속가능개발과 그를 위한 무형문화유산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하며, 한국의 무형문화재 정책이 어떻게 개발과의 관련 속에서 성립되어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지속가능개발 논의를 어떻게 국내정책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개발 개념의 전개와 지속가능개발

1. 개발 개념의 전개

개발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과 그 노력을 말한다.² 개발 개념은 산업성장과 민주주의의 확대와 함께 그 의미가 변화되어 왔다. 산업혁명이후 개발은 경제성장의 의미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정에서 빈부격차의 문제와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사회개발 개념이 더해지게 된다. 이후 경제개발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고갈로 인한 인류의 성장한계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개발이 제기된다. 이후 지속가능개발은 경제개발, 사회개발과 환경보호를 포괄하며 그 개념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1 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유산의 한국적 정책형태라 할 수 있다. 물론 그 두 개념을 상하 또는 광협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이 UNESCO에 의해 세계적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정책이라고 본다면 한국무형문화재정책은 일국적 수준의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무형문화유산 정책의 범주 안에 무형문화재정책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에 무리는 없어 보인다. UNESCO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념과 내용들이 한국의 무형문화재 정책에 모두 수용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배타성을 지닌 것으로 보기는 힘들기에 현재적 수준에서는 보편과 특수 관계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과 무형문화재 정책, 무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재 개념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2 'development'는 발전과 개발로 번역된다. 발전과 개발을 국어적 의미를 정리해 본다면, '발전'은 "더 낫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감"을 의미하고 '개발'은 "지식이나 재능 따위를 발달하게 함", "산업이나 경제 따위를 발전하게 함"을 의미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따라서 개발은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과 그 노력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 발전과 개발을 통칭하여 개발로 사용하고자한다. 다만, 인용문의 경우는 원문의 표현에 따라 발전과 개발을 사용하였다.

경제개발은 “단순한 총생산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생산구조의 변화, 생산요소배분의 변화, 생산환경의 변화, 사회구조의 변화, 인간자원의 개발 등 경제와 사회의 모든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생산력의 증대추세³를 말한다. 경제개발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나 현실적으로 그것은 경제성장에 방점이 놓여진다. 경제개발의 중국적 목표가 생산력 증대에 있고 경제성장은 양적 측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경제개발을 대표하는 목표가 된다.

그러나 경제개발은 경제 이외의 다른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발을 이뤄내는데 한계가 있기에 이에 대한 보완 개념으로 사회개발이 제기된다. 경제개발이 공업과 경제성장 중심의 전략이라면 사회개발은 국민복지의 향상을 지향하는 전략이다. 경제개발이 산업화에 중심에 두고 있다면 사회개발은 보건, 의료, 사회복지, 교육 등 사회적 조건의 개선에 중심을 둔다. 이 사회개발은 경제개발의 불균형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채택된 개념이기도 하지만 경제개발의 기반을 사회개발을 통해 마련한다는 전략을 담고 있기도 하다. 특히 후자의 경제개발 기반조성으로서의 사회개발은 저개발국의 사회개발을 접근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개발의 개념은 경제개발과 단순히 복지 확대를 넘어 참여의 측면까지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 왔다. 「개발의 권리에 대한 UN 선언」(1986)은 개발의 의미가 경제적 성과가 아닌 경제, 사회, 문화적 과정임을 밝히고 있다.

이 선언문은 “개발은 포괄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과정이며, 개발은 그 개발과정과 그로부터 산출되는 이익의 공정한 배분에 있어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참여를 기초로 하는 전체 주민과 모든 개인의 복지 개선을 목표⁴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개발은 단순한 경제적, 양적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과 공동체의 제반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주민들의 민주적인 참여와 권리 및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⁵ 따라서 개발은 경제개발로 시작되어 사회개발의 의미가 더해지고 주민의 참여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2. 지속가능개발과 UN의 개발목표

지속가능개발은 초기 경제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과 그것이 장기적으로 인류의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제기되었다.⁶ 지속가능개발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⁷로 정의된다. 자원에 대한 시간적 공유와 세대 간 공유를 포함한 개념이다. 이후 2002년 「요하네스버그선언」⁸을 통해 지속가능개발은 경제개발, 사회개발과 환경보호 세 영역의 통합적 개념으로 정립된다. 지속가능개발은 경제개발의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경제개발과 사회개발 및 환경보호를 포함한 보다 종합적인 개발의 의미로 진화하게 되는 것이다.

3 심경섭 외 4인, 2004, 『경제학입문』, 박영사, pp.449~450.

4 “development is a comprehensive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process, which aims at the constant improvement of the well-being of the entire population and of all individuals on the basis of their active, free and meaningful participation in development and in the fair distribution of benefits resulting therefrom”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전문 중 : <http://www.un.org/en/events/righttodevelopment/declaration.shtml>.

5 이태주, 2013,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흐름과 향후과제」, 『2013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한국정책학회, p.96.

6 1972년 로마클럽은 「성장의 한계」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개발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다.

7 “Sustainable development i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 1987, 『The Brundtland Report』, p.41.

8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02, 『Johannesburg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http://www.un-documents.net/jburgdec.htm>.



그림 1. UN의 17개 지속가능개발 목표.⁹

2015년 9월 UN 총회는 「지속가능개발 2030 의제」를 채택한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후 이를 보다 진전시켜 2030년까지의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이 의제는 17개의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사회·환경을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영역까지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서 문화유산 내지 무형문화유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표를 찾기는 쉽지 않다. 11번째 목표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의 조성」에서 문화유산이 언급되고 있는 정도라 할 수 있다. 11번째 목표의 세부목표 11-4에서 “세계의 문화와 자연유산을 보호하는 노력의 강화”¹⁰를 제시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직접적 언급의 부재, 지

속가능개발을 위한 문화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고려의 부족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¹¹ 이는 문화가 지속가능개발의 네 번째 축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지 못한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문화가 경제개발과 사회개발 및 환경보호의 저변에서 그 각 영역과 결합하는 양상을 규명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III.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문화와 무형 문화유산의 역할

1. 지속가능개발과 문화

지속가능개발에 경제, 사회 및 환경과 더불어 문화를 네 번째의 축으로 보자는 논의가 있어 왔다.¹² 존 호크스(John Hawkes)는 “문화의 활력이 사회적 형평, 환경적 책임과 경제적 활력만큼이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필수적”¹³이기에 문화를 지속가능개발의 네 번째 기둥(pillar)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문화는 경제, 사회, 환경과 구분되는 네 번째 기둥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문화는 일반적으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기반 또는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문화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9 UN 지속가능개발 지식플랫폼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

10 “Strengthen efforts to protect and safeguard the world’s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UN, 2016. 「Transforming our world –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22.

11 Ananya Bhattacharya와 Moe Chiba는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무형문화유산 분야가 소외되어 있다고 보고 개발과정에서 무형문화유산과 그 전승자들이 소외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1980년대 이래로 UNESCO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지도자들과 국제기구들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유산 분야의 잠재 가능성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2030 의제의 세부 목표 중에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연행자 공동체에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유산 연행자들은 발전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담론 속에서 또 다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2016, 『꾸리에』 27호, p.9.

12 아울러, ‘평화와 안전보장(Peace and Security)’을 네 번째 축으로 보는 문제의식도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력분쟁과 갈등에 대한 해결 없이 인류의 보편가치 실현을 위한 개발의 과제가 완수될 수 없다는 현실적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3 “cultural vitality is as essential to a healthy and sustainable society as social equity,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d economic viability”. John Hawkes, 2001, *The Fourth Pillar of Sustainability: Culture’s Essential Role in Public Planning*, Common Ground, p.vii.

2013년 항조우 선언을 통해 정리되고 있다. 「지속가능개발 정책의 핵심으로서의 문화」라는 부제를 갖는 「항조우 선언」은 다음과 같은 9개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¹⁴

1. 모든 개발 정책과 프로그램에 문화를 포함시킨다.
2. 평화와 화해를 촉진하기 위해서 문화와 상호이해를 활성화한다.
3. 통합적인 사회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모두에게 문화적 권리를 보장한다.
4. 빈곤퇴치와 포괄적인 경제개발을 위해 문화를 활용한다.
5. 문화를 기반으로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을 촉진한다.
6. 문화를 통해서 재해에 대한 탄력성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한다.
7. 문화를 소중히 하고 보호하며 미래세대에 전승한다.
8. 문화를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운영을 달성하기 위한 자원으로 활용한다.
9.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를 활용한다.

이어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을 앞두고 「플로렌스 선언」(2014년)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창조성의 원천으로서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고 문화는 지속가능개발의 동인이자 지원수단임을 확인한다.¹⁵ 최근 개정된 운영지침 또한 이러한 관점을 지니고 있다.

문화가 지속가능개발의 경제개발, 사회개발 및 환경보호 영역에 기반을 제공하는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기동으로 볼 것인가는 문화와 개발에 대한 좀 더 진전된 논의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간

삶의 개선과 지속가능개발에 있어 문화의 역할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임은 명확하다 할 것이다.

2. 지속가능개발과 무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이란 용어의 보편화 계기를 만든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그 시작부터 지속가능개발을 그 이념과 철학으로 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전문(前文)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이 지속가능개발을 보장함’을 밝히고 있고 제2조 정의를 통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고려해야 할 대상은 ‘지속가능개발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¹⁶

무형문화유산은 지속가능개발의 세 기동인 경제개발, 사회개발 및 환경보호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선, 경제개발의 측면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은 관광과 산업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활용과정에서 무형문화유산 전승자들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환경친화성을 통해서 관광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일례로 무형문화유산은 창조산업 육성의 핵심 콘텐츠를 제공한다. UNESCO 창조도시로 선정된 도시의 다수는 무형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한국의 이천이 도자기, 전주가 한지를 기반으로 창조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세계적으로 116개의 창조도시 중 무형문화유산으로 볼 수 있는 공예와 민속 분야에서 20여개 도시와 더불어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음식과 음악 분야에서 다수 도시들이 창조도시로 선정되어 있다.¹⁷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무형문화유산의 환경친화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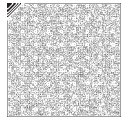
14 Hangzhou Congress, 2013, 「The Hangzhou Declaration Placing Culture at the Heart of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UNESCO.

15 UNESCO World Forum on Culture and Culture Industries, 2014, 「Florence Declaration」, UNESCO.

16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전문과 제2조(정의)는 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개발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a mainspring of cultural diversity and a guarantee of sustainable development”(전문),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consideration will be given solely to suc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is compatible with exis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s well as with the requirements of mutual respect among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and of sustainable development.”(제2조).

17 창조도시네트워크 사업은 UNESCO에 의해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지속가능개발의 전략요소로서 창조성을 보고 그러한 기반을 가진 도시들의 협력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UCCN) aims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and among cities that have recognized creativity as a strategic factor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 regards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environmental aspects.”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http://en.unesco.org/creative-cities>.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대이후의 급격히 확대된 생산력에 기반을 둔 개발은 그 이전까지의 지속된 인간과 자연간의 균형을 깨트리는 것이었다. 전근대 사회의 경우 개발은 자연과의 조화를 전제로 한 것이었고 그를 통해 생성된 문화가 무형문화유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무형문화유산은 자연친화성을 특징으로 한다. 무형문화유산 기술과 지식의 이러한 특성들은 환경보호와 경제개발의 접점을 마련하는데 있어 강점이 된다. 무형문화유산 공예기술의 환경친화성은 이미 검증된 것이기도 하다. 다만, 현재적 활용성을 확보하는 것은 좀더 진전된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개발의 측면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는 문화적 권리의 신장과 참여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그 사회개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 문화적 권리의 핵심은 정체성의 보장이며 이는 참여를 통해 확인되고 풍부해진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에 정체성을 제공하고 그 전승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개발에 공헌한다. 사회개발은 경제개발의 보완적 의미로 시작되었으나 사회개발은 복지뿐만 아니라 참여의 측면까지도 고려한 개념으로 확장되어 왔다. 이후 개발의 중심에 인간을 두어야 한다는 인간개발¹⁸ 개념이 사회개발과 결합되게 된다. 인간개발 개념의 선구자인 아마티아 센은 '자유로서의 개발'을 주장하며 인간개발을 경제적 부 보다는 인간생활의 풍부함을 진전시켜 나가

는 과정으로 본다.¹⁹ 인간개발의 개념 전개와 함께 사회개발은 경제개발 보다 상위적인 목표를 갖는 개발 분야로 자리잡게 된다.²⁰ 무형문화유산을 통한 자기인식의 강화와 함께 인간은 자유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간다. 인간개발이 무형문화유산과 결합하게 되는 것이다.

3.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운영지침」과 지속가능개발

2016년 6월, 유네스코 제6차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총회는 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새로운 장(章)을 추가하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운영지침」의 개정안을 의결한다.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보조를 맞추자는 의도와 더불어 지속가능개발에 있어 무형문화유산의 역할을 구체화해야할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



사진 1. 제6차 UNESCO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총회(2016.6.)²¹

18 UNDP에서는 인간개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Human development, as an approach, is concerned with what I take to be the basic development idea: namely, advancing the richness of human life, rather than the richness of the economy in which human beings live, which is only a part of it." UNDP, 인간개발보고서 홈페이지, <http://hdr.undp.org/en/humandev>.

19 "발전이란 우리가 영위하는 삶과 우리가 향유하는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과 관련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의 확장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며 장애를 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한편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끼침으로써 우리가 더 완전한 사회적 인간이 되도록 한다." 아마티아 센 · 김원기 옮김, 2013, 『자유로서의 발전』, 갈라파고스, p.57.

20 사회개발과 인간개발의 결합 계기는 UNDP 인간개발보고서와 1995년 세계사회개발정상회를 꼽을 수 있다. "1990년대 즉 UNDP가 '인간개발보고서'를 발간하고 인간개발을 개발의 중심목표로 간주하게 되었다. 게다가 이 시기에는 1995년 코펜하겐에서 사회개발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 WSSD)가 개최되어 빈곤, 고용, 사회적 통합이 주요한 사회개발의 개념으로 채택됨과 동시에 인간개발 · 인간중심형 발전이 개발목표로서 제시되었다." 이종훈, 2003, 『사회개발의 정황에 관한 연구』, 『청소년보호지도연구』 제4집, 한국청소년보호지도학회, p.120. 아울러, 인간개발과 사회개발은 강조점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사회개발의 목적은 인간의 능력과 복지 향상의 도모라는 점에서 인간개발과 사회개발 개념은 상당부분 중첩되고 있다. 그런데 인간개발이 선택과 역량 등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사회개발은 인간을 중심으로 개발의 사회적 성격에 주목하고 있다." 이금순 외, 2008, 『국제개발이론 현황』, 통일연구원, p.79.

21 UNESCO 아태무형유산센터 제공.

인다. 운영지침 제6장 ‘국가적 수준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와 지속가능개발’은 ‘포괄적인 사회개발’, ‘포괄적인 경제개발’,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무형문화유산과 평화’의 네 개의 절로 구성된다. 지속가능개발의 기존 세 개 축인 경제개발, 사회개발 및 환경보호와 더불어 평화가 포함된 것이 눈길을 끈다. 평화와 안보는 UN이 기존의 환경, 경제 및 사회와 함께 지속가능개발의 또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고 UNESCO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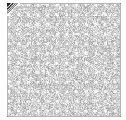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그 시작부터 이미 지속가능

개발을 그 배경과 이념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형문화유산보호와 결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천방향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이번 운영지침의 개정은 그 실천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아울러 UN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하여 무형문화유산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는 의의도 지닌다. 총 4절 15조로 이루어진 운영지침의 지속가능개발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운영지침의 국가적 수준의 무형문화유산보호와 지속가능개발 주요내용²²

구분	하위분야	주요내용
포괄적 사회개발	식량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지식과 관습이 농생물 다양성 유지, 식량안전, 기후변화 극복에 공헌하는 바에 대한 연구 식량관련 지식과 관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전승 보장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관련 지식과 관습의 연구, 전승 증진 및 접근성 향상
	양질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형문화유산 전승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공식·비공식 교육제도 속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잠재력을 활용 다양한 교육적 관습 및 제도 간 협력과 상호보완 증진
	양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간, 공동체간 상호존중을 위한 무형문화유산의 역할 존중
	깨끗하고 안전한 물 접근과 지속가능한 물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수자원관리시스템을 이해하고 과학적 연구 증진
포괄적 경제개발	소득창출 및 지속가능한 생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형문화유산을 통한 공동체의 수입창출 등에 대한 연구 공동체가 무형문화유산을 통한 수입의 주요 수혜자가 되도록 보장 및 소유권 박탈 없도록 보장
	생산적 고용과 양호한 일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형문화유산을 통한 공동체에 양질의 일거리 창출 증진 공동체가 무형문화유산을 통한 고용과 일거리 창출에서 수혜자가 되도록 보장
	무형문화유산보호에 있어 관광의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에 활용될 무형문화유산의 잠재성과 관광에 따른 무형문화유산에의 영향에 관심 무형문화유산의 관광의 수혜자가 되게 하고 관광으로부터 무형문화유산의 의미 생명력을 보장
환경적 지속성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관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지식 보유자로 공동체 등의 인정 전통지식에 대한 과학적 연구 증진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조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의 환경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형문화유산 보호로 인한 환경영향 연구 친환경적 행위 증진을 위한 조치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체 기반 회복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를 기후에 대한 전통지식 보유자로 인정 공동체의 기후변화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과학적 연구증진 공동체의 기후지식 접근 촉진 및 기후변화 완화 프로그램에 통합
무형문화유산과 평화	사회적 화합과 공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결속력 강화에 있어 무형문화유산보호의 공헌을 인정하고 이를 향상 무형문화유산을 분쟁 예방 및 해결의 수단으로 고려
	분쟁의 예방 및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형문화유산의 분쟁 예방과 평화적 해결 공헌에 대한 연구 증진
	평화와 안전의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와 안전의 회복을 위한 무형문화유산의 공헌에 대한 연구 증진
	지속적인 평화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주민, 이주자 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문화 간 대화와 문화다양성 보호행위의 평화유지 잠재력 실현

22 운영지침 제4장의 제170조부터 제197조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필자의 선택적 요약이다.



지속가능개발과 관련한 장을 추가하는 이번 운영지침의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개발과 결합을 위한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방향과 과제는 일정한 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개발과 무형문화유산보호의 접합영역에서 발생 가능한 사안들에 대응하는 다양한 준칙들이 제시되고 있다. 다만, 대개의 조항들이 연구증진 등 구체성과 실행성이 약한 과제들이 다수를 이루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속가능개발과 결합하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모범사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보다 구체성과 실행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개발의 이행과제를 협약 내에 수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V. 지속가능개발의 한국무형문화유산정책에의 수용 방향

1. 한국무형문화유산정책의 전개와 개발

한국의 무형문화재제도는 1962년 1월 10일 도입되었다.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었고 그 문화재보호법에 무형문화재 제도가 포함된 것이다. 또한 1962년은 본격적인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되던 해다. 1962년 1월 13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된다. 무형문화재정책은 그 시작부터 개발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무형문화재정책은 경제개발을 위한 외부자원을 결집시켜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하나였다. 근대이전의 문화는 근대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근대를 구성하는 핵심적 기제로 작동한다. 전통문화를 통한 국민형성(nation building) 역할은 무형문화재가 근대산업 국가에서 하나의 근대적 제도로 정착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다.²³

무형문화재 정책은 한국의 개발전략의 방향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개발과정에서 국

가주도 개발전략을 취하게 된다. 무형문화재정책 또한 이러한 흐름과 궤를 같이 하며 전개되어 왔다. 1960년대 이후 국가주도 성격을 강화시켜 왔고, 1980년대에 그 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개발과 함께 시작된 무형문화재제도는 전수교육조교 선정, 이수증 발급을 내용으로 하는 전수교육제도를 도입하면서 현재와 같은 무형문화재 제도의 틀을 완성한다. 전수교육제도는 무형문화재 전승과정에 국가가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주도 개발방식이 무형문화재제도에서 구현된 것이다.

2. 새로운 무형문화유산 정책에의 요구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권위주의체제에서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주의체제로 전환되어 왔고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정책 틀의 변화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무형문화유산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로도 연결된다. 1990년대 규제개혁 정책이 본격화 되고 무형문화재정책에도 국가개입주의의 완화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정책환경의 변화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의 역할 변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가개입주의의 완화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미성숙과 국가의 준비 부족은 일정한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하였으나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무형문화유산보호체제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

또한 개발의 진행은 무형문화재 전승에의 국가개입 축소와는 별도로 무형문화재 정책에 새로운 차원의 개발 과제를 요구한다. 1962년 이후 경제개발 중심의 환경 속에서 이뤄진 무형문화재 정책과 제도는 2000년대 이후 크게 두 가지 요구를 받고 있다. 첫째는 무형문화유산의 산업화에 대한 요구이며, 둘째는 무형문화유산을 통한 문화적 권리 신장에 대한 요구이다. 2000년대 이전 무형문화재가 경제개발을 위한 하나의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요구 받았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무형문화유산 자체가 문화산업의 자

23 무형문화재의 제도화와 동시에 근대적 역할을 부여 받지 못한 전통문화는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형문화재와 민속학의 공조와 차이는 또 다른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무형문화유산보호제도가 한세대 앞선 선발국으로서 역사적 점검이 필요한 주제이다.

원, 문화상품의 하나로 역할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아울러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문화서비스 기능 강화를 요구받고 있기도 하다. 전자가 경제개발의 연장 속에 있다면 후자는 사회개발의 논리를 반영한다.²⁴

사회개발의 측면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은 2000년대 이후 시작되었으나 아직까지 본격화 되지는 못하고 있다. 문화정책 영역에서 사회개발과 관련된 주제는 문화복지,²⁵ 문화적 권리와 문화예술교육 등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게 된다. 사회개발의 주요주제들이 문화의 영역에 투영되는 형식을 취하며 나타나게 된다. 사회개발은 복지, 인권, 교육, 보건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구성된다. 무형문화유산의 영역에서 이러한 사회개발의 문제의식 또한 전승자들에 대한 복지, 무형문화유산 향유권, 무형문화유산교육 등의 주제로 나타난다.

3.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한국무형문화유산정책의 과제

한국무형문화유산정책은 개발의 새로운 주제들에 적극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개발과의 연계성을 심화하고 사회개발 주제들과 적극 결합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역할들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다. 지속가능개발과 무형문화유산보호와의 결합은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적용 필요성과 가능성 측면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운영지침」상의 지속가능개발 관련 조항과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에서 도출되는 한국무형문화유산정책의 주요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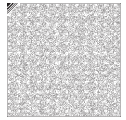
첫째 무형문화유산교육의 방향 정립이다. 운영지침은 제180조를 통해 당사국이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무형문화유산의 특수한 역할을 강조하고 무형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도 무형문화유산교육과 사회교육 및 학교교육의 결합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교육은 전승자들의 노력 속에서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 교육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가 현재적 고민의 지점을 형성하고 있다. 학교교육과의 결합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무형문화유산교육을 결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들이 문화재청과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시작되었고 무형문화재 또한 문화예술교육법상의 문화예술교육의 범주에 포함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형문화재 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²⁶ 그러나 무형문화유산과 예술의 개념과 현실에서의 차이는 무형문화유산교육이 발전하는데 있어 제약이 된다. 새로운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교육 개념과 철학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개념과 철학의 정립은 한국무형문화유산교육정책의 본격화를 위한 선행과제라 할 것이다.

둘째 관광내지 산업화의 영향으로부터 무형문화유산의 고유한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다. 운영지침 제187조는 '무형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관광에 있어서의 잠재적 가치

24 문화정책 일반의 영역에서는 전자가 문화산업진흥기본법(1999.5.9. 제정)과 관련된다면, 후자는 문화기본법(2014.3.13. 제정)과 맥락을 공유한다.

25 전승자 복지의 경우 보유자 등 국가와 지자체에 의해 인정·선정된 일부 전승자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는 전승자 일반에 대한 복지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무형문화재보호 정책은 전통문화 전승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고 시작되었다. 전승지원금은 그 법적 성격과 무관하게 생계보호를 위한 지원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고 전승취약종목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적 성격의 전승지원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사회개발의 영역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무형문화재 전승자에 대한 지원은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인지원 보다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복지법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의 사회보험지원, 보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6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는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에게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을 주고 있기도 하다.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른 문화재교육 지원은 무형문화재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를 존중하고 그 관광의 이익에서 공동체와 전승자들이 소외되지 않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관광과 산업화에 의해 손상될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고유한 생명력이 무엇이고 그것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무형문화유산보호정책의 최대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셋째 도시와 거주지의 어메니티 향상 또한 무형문화유산정책이 새롭게 개척해 나가야 할 분야라 할 수 있다.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제11번째 목표로 '포괄적이고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을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문화유산을 보호할 것을 제시한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환경적 보호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설정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 지역에 대한 지금까지의 규제 중심에서 어메니티 강화로 정책방향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역사문화환경보존 정책 전환 논의는 유형(有形)의 문화유산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무형문화유산 또한 이 정책과 결합해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무형문화유산과 전통문화의 풍부함과 그것의 향수(享受) 가능성은 하나의 도시와 거주지가 매력을 확보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느끼는 계기가 된다. 이는 무형문화유산이 보다 포괄적이고 주민 중심적인 개념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과제와 연결된다.²⁷

넷째 평화를 위한 무형문화유산의 역할 규명이 필요하다. 운영지침에서 '무형문화유산과 평화'는 제6장의 제4절을 구성한다. 이 절은 당초 「평화와 안보」라는 제목을 갖

고 제기되었으나 이러한 과제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운영지침으로 적합한 것인가를 두고 UNESCO 총회의 개정안 채택 시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지속가능개발의 3대 기둥으로 정립된 경제, 사회와 환경 분야와 달리 평화와 안보의 영역에서 무형문화유산이 효과적 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안보' 주제는 세계 분쟁지역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한반도에서 소홀하게 볼 수 없는 무형문화유산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다. 정치적 통일 이전 남북한 주민이 문화적 동질감을 확보하고 정치적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주민이 공통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 무형문화유산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²⁸

다섯째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운영지침 제6장의 각 조항들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각 사업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그 이익을 공동체에 귀속시킬 것을 요구한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계와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형유산지기」 사업²⁹은 이러한 민간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새로운 시도다. 그것의 완성은 공동체와 주민이 주도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체계의 정립이 될 것이다. 각성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중심의 무형문화유산보호 체계 마련은 인간중심 사회개발과 문화적 권리 실현을 위한 필수적 과제이다.

27 최근 전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결합한 도시재생 전략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전주시는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미래유산포럼을 개최하며 이러한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기존의 문화유산이 갖는 협의의 역사성과 차별화된 기억성의 문제를 담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의 경우 살아 있는 유산으로서 그 보존과 전승이 일종의 기억작용으로 볼 수 있기에 무형문화유산의 관점에서 이러한 기억을 매개로한 문화유산 접근은 상당히 친숙한 것이기도 하다.

28 물론 남북한 주민의 공동정체성과 더불어 분단 시기 동안 이질화된 무형문화유산의 전통 또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이 담고 있는 다양성 존중의 원칙은 남북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존중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화합을 위하여 주요한 한민족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류무형유산 공동체 등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쉽게 시행할 수 있는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9 "국립무형문화유산원에서는 개원하기 이전인 2013년부터 준비하여, 매년 거주지역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가진 사람을 공개모집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2016년 1월 기준 118명의 무형문화유산지기들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성미, 2016,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민간 지역조사 활동의 비평적 검토와 나아갈 방향 -무형문화유산지기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4(1), 한국지역사회학회, p.141.

V. 결론

지속가능개발이 무형문화유산정책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고민의 주제가 되고 있다.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 대표되고 무형문화유산보호 분야에서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운영지침」 개정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정책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나름의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그리고 국내적 수준에서도 한국은 반세기 이상의 개발과정과 병진하여온 무형문화유산정책을 새로운 단계의 문화정책으로 진입시켜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속가능개발은 국제적 수준과 국내적 수준에서 공히 요구되는 무형문화유산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지속가능개발을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정책에 담아내기 위하여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운영지침」이 제시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한 적절한 이행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무형문화유산보호의 과제는 교육, 관광과 산업, 거주공간, 평화, 민간참여 등의 영역에서 그 핵심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 지속가능개발과 무형문화유산보호의 결합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기도 하다.

한국무형문화유산정책의 새로운 개발영역으로의 확장 전망 속에서 지속가능개발은 사회개발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및 환경보호를 결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다.³⁰ 사회개발은 한국의 현 개발단계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고민되어야 하는 영역이며, 무형문화유산정책 또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무형문화유산 향유권과 무형문화유산 교육은 그 개념과 주체에 대한 정리가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기도 하다.

또한 지속가능개발은 인간개발과 문화적 권리의 신장

이라는 관점에서 포괄적인 전략을 갖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 구성을 위하여 무형문화유산과 인간개발 및 문화적 권리와 관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고, 이는 무형문화유산이 갖는 정체성 구성 기능과 그것의 작동 방식에 대한 해명을 통해 가능하다. 문화적 권리가 정체성 구성의 조건이라면 인간개발은 그러한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자 목표이기 때문이다.

30 가령,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의 결합은 사회적 자본 영역에서 이뤄진다. 경제개발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던 시기에 무형문화유산은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 왔고 이 사회적 자본은 경제개발에 순기능을 하였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의 역할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참고문헌

- 심경섭 외 4인, 2004, 『경제학입문』, 박영사
- 아마티아 센 · 김원기 옮김, 2013, 『자유로서의 발전』, 갈라파고스
-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2016, 『꾸리에』 제27호
- 이금순 외, 2008, 『국제개발이론 현황』, 통일연구원
- 이종훈, 2003, 「사회개발의 정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보호지도연구』 제4집, 한국청소년보호지도학회
- 이태주, 2013,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흐름과 향후과제」 『2013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한국정책학회
- 정성미, 2016,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민간 지역조사 활동의 비판적 검토와 나아갈 방향—무형문화유산지기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4, 한국지역사회학회
- Hangzhou Congress, 2013, 「The Hangzhou Declaration Placing Culture at the Heart of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UNESCO
- John Hawkes, 2001, *The Fourth Pillar of Sustainability: Culture's Essential Role in Public Planning*, Common Ground
- UN, 2016, 「Transforming our world—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 UNESCO, 2016, 「Operational Directiv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UNESCO,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UNESCO World Forum on Culture and Culture Industries, 2014, 「Florence Declaration」, UNESCO
-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WCED), 1987, 「The Brundtland Report」
-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02, 「Johannesburg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 UN 지속가능개발 지식플랫폼,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
-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http://en.unesco.org/creative-cities>
- UNDP, 인간개발보고서 홈페이지, <http://hdr.undp.org/en/humandev>

Sustainable Development and Kore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y

Kim Yong Goo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orresponding Author : altay@korea.kr

Abstract

In September 2015, the United Nations (UN) has adopte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goa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ush forward from the year 2016 to 2030. Accordingly,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UNESCO) has established a new chapter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tangible heritage the through revision of the Operational Directiv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lthough Sustainable development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is believed that the Convention has not provided guidelines of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Operational Directives provide States Parties with guidelines on the integr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Institution of South Korea was designed to preserve the traditional culture in the economic development process of the industrialization since the 1960s. The institution played a role of cultural support on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concepts. Now South Korea should impleme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y combined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while succeeding the efforts from the former development.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ow it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y in South Korea. An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outh Kore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y should foster sustainable development particularly along with social development and human development.

Keywo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ceived 2016. 07. 18

